

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

I 재입학 여석 현황

1. 재입학 계열별 및 정원 내·외별 여석 현황

구분	여석 현황		계	비고
	정원내	정원외		
주간	의료인양성	0	1	1
	교원양성	0	0	0
	일반 학과(부)	53	27	80
야간	의료인양성	0	1	1
	일반 학과(부)	0	1	1
합계		53	30	83

- 교원양성학과 정원외 총 학생 수의 합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(근거: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15270(2021.11.26.)붙임 1-6)

2. 재입학 여석 산출법

- 2023학년도 후기(10. 1자) 3, 4학년 제적(자퇴)생 수를 산정
- 정원 내·외 및 주·야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함
- 모집단위는 의료인양성관련, 교원양성관련, 야간학부(과), 이를 제외한 주간학부(과)로 구분함
※ 단, 주간 일반학부(과)는 모집단위별로 아닌 총 정원으로 산출
-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의학과는 재입학 불가

3. 재입학 안내

- 정원 내·외 입학자는 각각의 정원 내·외에 여석이 있어야 지원 가능
- 교원 및 의료 양성 관련 학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의 학생은 소속 모집단위에 여석이 없더라도 총정원에 대한 여석 내에서 재입학 지원 가능
-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(부칙)에 따른 모집단위에 재입학 가능
 - 입학 후 모집단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하는 학생에게 사전 공지

II 계열별 및 정원 내·외별 세부 여석 현황

1.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·외별 여석

모집단위	정원 내	정원 외	비고
의예과	불가	불가	가. 각 모집단위 및 정원 내/외별 여석에 따라 재입학 지원 가능 나.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지원 불가
의학과	불가	불가	
약학과	0	0	
간호학과	0	2	
임상병리학과	0	0	
물리치료학과	0	0	
작업치료학과	0	0	
계	0	2	

2.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·외별 여석

모집단위	정원 내	정원 외	비고
특수교육과	0	0	교원양성학과는 정원외 총 학생 수의 합이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(근거: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15270(2021.11.26.) 붙임1-6)
유아교육과	0	0	
계	0	0	

-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재입학 여석 없음

3. 야간 학과 정원 내·외별 여석

모집단위	정원 내	정원 외	비고
의료인력 양성	간호학과(야) 3학년 특별과정	0	1
	계	0	1
일반 학과(부)	산업안전보건학과(야) 3학년 특별과정	0	1
	계	0	1

4. 주간학과(부) 정원 내·외별 여석[상기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주간 학과(부)]

정원 내	정원 외	비 고
53	27	- 나머지 모든 학과(부)의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

III 재입학 업무 일정

연번	추진 기간	단위업무	주관부서	내용
1	2023.12.21.(목)	추진 계획 및 여석 현황 보고	학사 관리과	모집 일정 보고
2	2023.12.22.(금)	공고 및 회람	학사 관리과	홈페이지 공고
3	2023.12.26.(화) 2024.1.8.(월)	재입학 신청	재입학 회망자	각 학과(부)에서 서류 접수
4	1.9.(화)~1.12.(금)	재입학 심사(1차)	단과대학, 학과(부)	* 재입학은 1차적으로 학과(부)장 및 단과대학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- 재입학을 불허할 경우: 사유 제출
5	1.16.(화)	신청 현황 제출	단과대학	각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학사관리과로 제출
6	1.17.(수)~1.22.(월)	재입학 심사(2차)	학사 관리과	재입학 심사 및 허가 여부 판정 (총장 허가 사항)
7	1.26.(금)	허가자 공고 및 등록(수강신청) 안내	학사 관리과	* 각 학과(부)에서 개별(전화) 통보 * 학사관리과에서 매일 통보
8	2.5.(월)~2.7.(수)	예비 수강신청	재입학 허가자	* 예비 수강신청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
9	2.14.(수)~2.16.(금)	수강신청	재입학 등록 완료자	* 수강신청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 * 재입학 최종허가가 늦을 경우 별도 수강신청기간 부여 예정 * 학과(부)에 문의하여 웹상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
10	2.26.(월)~2.28.(수)	등록 기간	재입학 허가자	* 등록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 * 해당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
11	2.29.(목)	최종 재입학생 보고	학사 관리과	최종 재입학생(등록 완료자) 현황 보고
12	2.29.(목)	최종 재입학생 통보	학사 관리과	각 단과대학, 학과(부), 학생복지처(장학), 백인제기념도서관, 사무처(경리과)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 재입학 관련 규정

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29조의2(재입학) ①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·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,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(이하 "총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6. 5.>

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. 다만,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,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.

학 칙

제26조(재입학)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총 입학정원(주·야 및 정원의 내외 구분)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09.3.1., 2012.3.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③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학사운영규정

제102조(재입학) ① 성적경고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지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3.1.>

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보호자 연서의 재입학원<별지서식 제21호>을 해당학과(부)장 및 학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07.3.1.>

④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.<개정 2009.3.1., 2023. 3. 1.>

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미등록 제적된자의 당해학기 재입학 허가는 1학기는 당해 연도 3월 20일까지, 2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재입학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3. 1.>

⑥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.